



2023. 3. 22.

문서번호 : 지질동맥 2023-57

수 신 : 회원 제위

제 목 : 2022년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신청 안내의 건

1.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 2023년도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니 첨부한 규정을 참고하시고 제7조 연구비 지원신청방법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본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평가는 최근 3년간(2020.1~2022.12)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를 국내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책임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로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, 연구 성과의 우수성과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. 또한 본 학회의 활동 내역과 학술지인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(JLA)의 게재논문 및 인용논문 편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4. 지원 자격 사항은 규정 제3조를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- 다 음 -

5. ▶ 대상 및 상금내역 : 2명 이내, 1인당 1,000만 원
6. ▶ 신청마감일 : 2023년 5월 29일(월)
7. ▶ 신청서류 : 신청서(이력서, 연구계획서, 정회원 추천서 포함), 연구업적(논문의 목록 및 pdf 파일 또는 실적물 별책 각 1부) 및 기타 증빙자료
8. ▶ 보내실 곳 : [ksla-2@lipid.or.kr](mailto:ksla-2@lipid.or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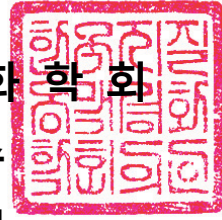
감사합니다.

[첨부자료] 1.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규정 1부.

2.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신청서 1부.

3. 연구업적목록 1부. 끝.

한 국 지 질 · 동 맥 경 회  
회 장 박 경 수  
이 사 장 김 재 택



#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규정

제정: 2017년 9월 9일  
개정: 2018년 4월 16일  
개정 : 2019년 1월 23일  
개정 : 2019년 9월 18일  
개정 : 2019년 11월 20일  
개정 : 2020년 3월 18일  
개정: 2020년 5월 20일  
**개정: 2021년 7월 21일**

## 제 1 조 (명칭)

본 연구비의 명칭은 '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'라 한다.

## 제 2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(이하 '연구비'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3 조 (지원 대상 및 연구비 규모)

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정회원을 1년 이상 유지한 만 45세 이하 회원으로 매년 2명 이내로 한다. 연구비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<2021.7.21>

## 제 4 조 (연구비 관리와 운영)

- (1)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- (2) 상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3) 상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.
  - ①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
  - ②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분
  - ③ 연구비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

## 제 5 조 (연구비 지원의 기본 원칙)

- (1) 연구비의 지원은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젊은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(2)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은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- (3) 연구비 지원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연구시작일은 위탁연구용역 계약서(별첨) 상의 계약일로 한다.

## 제 6 조 (연구비 지원 신청 자격)

- (1) 연구기간 중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, 3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.
- (2) 연구비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 7 조 (연구비 지원 신청 방법)

연구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(1)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신진학술연구비 신청서
- (2)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 및 기타 증빙자료
- (3) 연구계획서
- (4) 추천서 1통: 전공의, 전임의는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정회원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수행할 연구임을 증명한다는 보증의 말이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8 조 (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 절차 및 기준)

- (1) 연구비 지원 과제는 상선정위원회의 서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- (2)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에 있어서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①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
  - ② 지원자의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업적
  - ③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
  -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
  - ⑤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

## 제 9 조 (연구비 지급 방법)

- (1)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과 소정의 계약서(별첨)를 이용한 계약을 체결한 후, 최대한 조속히 연구자 소속기관 연구비 운영처로 소정의 연구비를 입금한다.
- (2) 기관에 지불하는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는 기 결정 연구비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.

## 제 10 조 (계약서)

계약서는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의 별첨 양식 혹은 연구자의 소속기관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## 제 11 조 (연구자 의무)

- (1) 연구자는 해당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해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한다.
- (2) 연구자는 해당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된 내용의 원저를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지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(JLA)에 연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고해야 한다.
- (3) 연구자는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지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(JLA)에 원저 게재시에 "This study was supported by funding from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"라고 기재하여야 한다.

(4)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연구계획 변경 및 보고 기한의 연장)

연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 기간, 연구 내용 또는 제목 등 연구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3 조 (연구 중단 시 보고)

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사고,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.

제 14 조 (연구 중단 및 연구비 회수)

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- (1) 연구 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- (2)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- (3) 연구 지원 신청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
- (4)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연구 결과의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투고를 하지 않은 경우
- (5) 연구비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(6)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- (7) 연구 종료 후 적절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제 15 조 (연구비의 집행 관리)

연구비의 집행,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 소속기관의 위탁계약에 따른다.

제 16 조 (보칙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.